트루엘 TRUEL 해운대 센텀 트루엘(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안내서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비하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 본 주택은 「도시정비법」 및 「빈집 및 노후 공공주택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2016.10.17. 시행: 재개발사업 시행자 2016.10.17. 지정: 재개발사업 시행자 2016.10.17.)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주택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 20. 모델하우스 개관일)부터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임.
- 본 주택은 전매한 주택분양 증명서를 취득한 청약자(분양권 포함)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 : 분양가 상한제 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세대별 분양가격 : 붙임 1 참조

※ 공급대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임.

※ 주택의 위치 및 주택형별 공급대상 세대 수 : 붙임 1 참조

※ 공급대상 및 내역 : 아파트 3개동 – 지상20층~29층 4개동 총 300세대

- 59.9663A : 101개세대(일반공급 45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 33세대, 노부모부양공급 : 33세대, 노부모특별공급 :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분양예정임

※ 공급대상 : 붙임 1 참조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촌2-5427호(2016.10.28).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이동 1-5번지 외 6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3개동 – 지상20층~29층 4개동 총 300세대

- 59.9663A : 101개세대(일반공급 45세대,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 33세대, 노부모부양공급 : 33세대, 노부모특별공급 :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분양예정임

※ 공급대상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	주택형 (전용면적 타입명칭)	타입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공급세대수(세대)								최저층 배정 세대	해당층	입주 예정 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합계	합계	일반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노부모 특별	일반 공급	특별공급			
지상층	2016103T1-01	59.9663A	59H	59.9663	22.8971	82.8634	32.5172	115.3705	25.1122	45	4	4	4	1	32	2	10층	10층	2019.07.
	2016103T1-02	59.9663B	59K	59.9663	22.8971	82.8634	32.5172	115.3805	25.1122	61	8	8	8	2	35	2	10층	10층	
	2016103T1-03	74.9984A	74A	74.9984	28.5652	103.5636	40.6568	144.2125	31.4031	38	4	4	4	1	24	1	10층	10층	
	2016103T1-04	84.9593A	84A	84.9593	31.5152	116.5345	46.0927	162.5972	35.5786	110	11	11	11	3	74	4	10층	10층	
	2016103T1-05	84.9882B	84B	84.9882	31.5184	116.5666	46.0786	162.6452	35.5907	56	6	6	6	2	37	2	10층	10층	
합계										330	33	33	33	8	223	1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원)

주택명	공급세대수	동 호	층 구분	택지비(㎡)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체결시	2016.12.19.	2017.04.21.	2017.08.21.	2017.12.21.	2018.04.23.	2018.08.21.	2018.12.21.	입주지정일
59.9663A	45	104동 2~10층	2F ~ 10F	33,903,639	207,096,361	241,000,000	10,00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11F ~ 20F	33,903,639	203,596,361	237,500,000	10,00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21층 이상	33,903,639	201,896,361	235,800,000	10,00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70,500,000
59.9663B	61	104동 3,4층	3F ~ 5F	33,903,639	207,096,361	241,000,000	10,00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300,000
			6F ~ 10F	33,903,639	205,396,361	239,300,000	10,00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300,000
			11F ~ 20F	33,903,639	203,696,361	237,600,000	10,00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300,000
			21층 이상	33,903,639	201,996,361	235,900,000	10,00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300,000
59.9663B	81	104동 3,4층	3F ~ 5F	33,903,639	207,096,361	241,000,000	10,00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72,300,000
			6F ~ 10F	33,903,639	212,096,361	246,000,000	10,000,000	1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3,800,000
			11F ~ 20F	33,903,639	210,396,361	244,300,000	10,000,000	1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3,800,000
			21층 이상	33,903,639	208,696,361	242,600,000	10,000,000	1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24,600,000	73,800,000
74.9984A	38	103동 2~5층	2F ~ 5F	42,396,897	252,103,103	294,500,000	10,000,000	19,450,000	29,450,000	29,450,000	29,450,000	29,450,000	29,450,000	29,450,000	88,350,000
			6F ~ 10F	42,396,897	250,403,103	292,800,000	10,000,000	1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11F ~ 20F	42,396,897	248,703,103	291,100,000	10,000,000	2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90,450,000
			21층 이상	42,396,897	247,003,103	289,400,000	10,000,000	2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30,150,000	90,450,000
84.9593A	110	101동 3,4층	3F ~ 5F	48,084,183	286,965,817	335,050,000	10,000,000	2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92,100,000
			6F ~ 10F	48,084,183	288,965,817	337,050,000	10,000,000	20,7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3,600,000
			11F ~ 20F	48,084,183	287,965,817	336,050,000	10,000,000	20,7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34,000,000	102,000,000
			21층 이상	48,084,183	297,965,817	346,050,000	10,000,000	2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84.9882B	56	101동 2층	2F	48,084,183	297,915,817	346,000,000	10,000,000	24,4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3F ~ 5F	48,084,183	299,915,817	348,000,000	10,000,000	24,4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6F ~ 10F	48,084,183	298,915,817	347,000,000	10,000,000	24,4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34,900,000	104,700,000
			11F ~ 20F	48,084,183	297,965,817	346,050,000	10,000,000	2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21층 이상	48,084,183	297,915,817	346,000,000	10,000,000	2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34,400,000	103,200,000

※ 평형표시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9.4.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와 유사하게 혼동하는 경우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기취득세 납부비용 제외 금액임.
- 상기세금 계산기준일는 :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입주하는 경우 입주지정일 기준 공급금액 및 대지비금액 기준 양도세 등 세금 계산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공급금액 분양대금만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하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비 및 건축비 구분은 분양가격 결정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기준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결정 및 공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결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세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것이며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공사비 및 실제 건축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결정되었으며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공사비 및 실제 건축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면적 및 기타 공용면적 등 분양되지 않는 면적이 있으며 이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 등 분양면적에 일정 비율로 배분되어 공급되는 것이며 이 면적은 해당 주택의 실제 공사비 및 실제 건축비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도시정비법」 및 「빈집 및 노후 공공주택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2016.10.17. 시행: 재개발사업 시행자 2016.10.17. 지정: 재개발사업 시행자 2016.10.17.)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주택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임.
- 본 주택은 전매한 주택분양 증명서를 취득한 청약자(분양권 포함)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 : 분양가 상한제 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청약조항 : 기업, 국민, KB등록,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아울러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비하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십시오.

- 본 주택은 「도시정비법」 및 「빈집 및 노후 공공주택 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2016.10.17. 시행: 재개발사업 시행자 2016.10.17. 지정: 재개발사업 시행자 2016.10.17.)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주택임.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 6개월 이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임.
- 본 주택은 전매한 주택분양 증명서를 취득한 청약자(분양권 포함)에 대한 전매제한이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임 : 분양가 상한제 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임에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책정되었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본인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적용되는 주택임 : 전매 제한 기간 이내 전매 시 불이익 발생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임.

※ 주택의 위치 및 주택형별 공급대상 세대 수 : 붙임 1 참조

※ 주택의 층별 배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임.

트루엘 TRUEL 해운대 센텀 트루엘(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시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로 간주 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지역"에 지정되어 2016.10.17. 시행 제정한 신탁계약체결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간주됨.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16. 10. 28. 입내. 현재까지 최초건축기간. 1.0년 지역인 분양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4조 및 동시행령 제78조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입주자모집 청약신청일 당시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한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귀책사항으로 인한 입주 및 계약 불이익은 당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을 제외한 본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는 분의 모든 정보 유출에 관행성인정 방법일지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접수 기간은 아래 청약일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주택 견본주택에서 상담하시면 "주택공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가능하며 이때 청약자 사항은 공동 결제하www.applyh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배점표"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을 제외한 본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하시는 분의 모든 정보 유출에 관행성인정 방법일지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주택 견본주택에서 상담하시면 "주택공급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가능하며 이때 청약자 사항은 공동 결제하www.applyh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배점표"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주택명	공급세대수	동 호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공급세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체	입주일
								특별공급							
59.963A	42	2018동	2F~5F	2	43,113,253	197,886,747	241,000,000	10,000	13,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103,500,000	2019. 10. 31.
			6F~10F	5	43,113,253	203,886,747	247,000,000	25,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140,300,000	
			11F~15F	12	43,113,253	197,886,747	241,000,000	1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106,500,000	
			16F~20F	14	43,113,253	203,886,747	247,000,000	25,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140,300,000	
			21층 이상	4	43,113,253	206,886,747	250,000,000	1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148,500,000	
59.963B	43	2018동	2F~5F	2	43,113,253	197,886,747	241,000,000	10,000	1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23,500,000	103,500,000	
			6F~10F	5	43,113,253	203,886,747	247,000,000	25,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140,300,000	
			11F~15F	12	43,113,253	197,886,747	241,000,000	10,000	1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24,100,000	106,500,000	
			16F~20F	14	43,113,253	203,886,747	247,000,000	25,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23,700,000	140,300,000	
			21층 이상	4	43,113,253	206,886,747	250,000,000	1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24,900,000	148,500,000	
74.9884A	47	2018동	2F~5F	2	53,913,559	252,586,441	306,500,000	10,000	16,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130,700,000	
			6F~10F	12	53,913,559	259,586,441	313,500,000	26,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191,650,000	
			11F~20F	20	53,913,559	253,586,441	307,500,000	10,000	16,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130,700,000	
			21층 이상	3	53,913,559	256,586,441	310,500,000	16,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30,950,000	191,650,000	
75.2877B	69	2018동	2F~5F	2	54,128,743	252,371,257	306,500,000	10,000	16,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130,700,000	
			6F~10F	12	54,128,743	253,371,257	307,500,000	1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189,850,000	
			11F~20F	20	54,128,743	252,371,257	306,500,000	10,000	16,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29,950,000	130,700,000	
			21층 이상	2	54,128,743	253,371,257	307,500,000	2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192,800,000	

※ 평형환산명칭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공통사항

- 2000.4.1.부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및 제3호 및 제4호 및 제5호 및 제6호 및 제7호 및 제8호 및 제9호 및 제10호 및 제11호 및 제12호 및 제13호 및 제14호 및 제15호 및 제16호 및 제17호 및 제18호 및 제19호 및 제20호 및